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 - 64
----------	---------

제출년월일 : 2013.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과 주차장 이용요금 부과 단위를 변경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구획 운영 및 요금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행중인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및 규격에 대하여 근거규정 신설 (안 제21조의4 및 별표 3)
- 나.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10분에서 5분으로 조정(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 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률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4호)
- 라.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면 제공과 주차요금 50퍼센트 할인조문 신설(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22호)
- 마.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제명 및 내용 변경(안 별표 1의 비고 제3호 및 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
 - 제6조제2항 : 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

-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 : 노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3. 7. 4. ~ 7. 24 (제출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문 변동내역

- 1)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노상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일정과 관련하여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1회 주차 시 5분당 주차요금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2) 별표 1 중 노외주차장의 1회주차시 5분당 요금을 현행 10분당 요금의 1/2로 조정
- 3) 별표 1의 비고 제22호 중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정의

마. 2013년 제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3.8.13)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③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

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1회 주차 시 5분당 주차요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 정 기 권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150,000	6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00,000	40,000	20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20,000	150	환승목적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5급지 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시 월 정기권 요금
 -노상주차장 : 월 4만원
 -노외주차장 : 월 5만원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이화여대길·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2) 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

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

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내지 5급지 지역의 공영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2.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14.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스스로 쉬게 하는 시민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1급지, 5급지 소재 주차장은 제외)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16.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17.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두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19.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0.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한다)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단, 학교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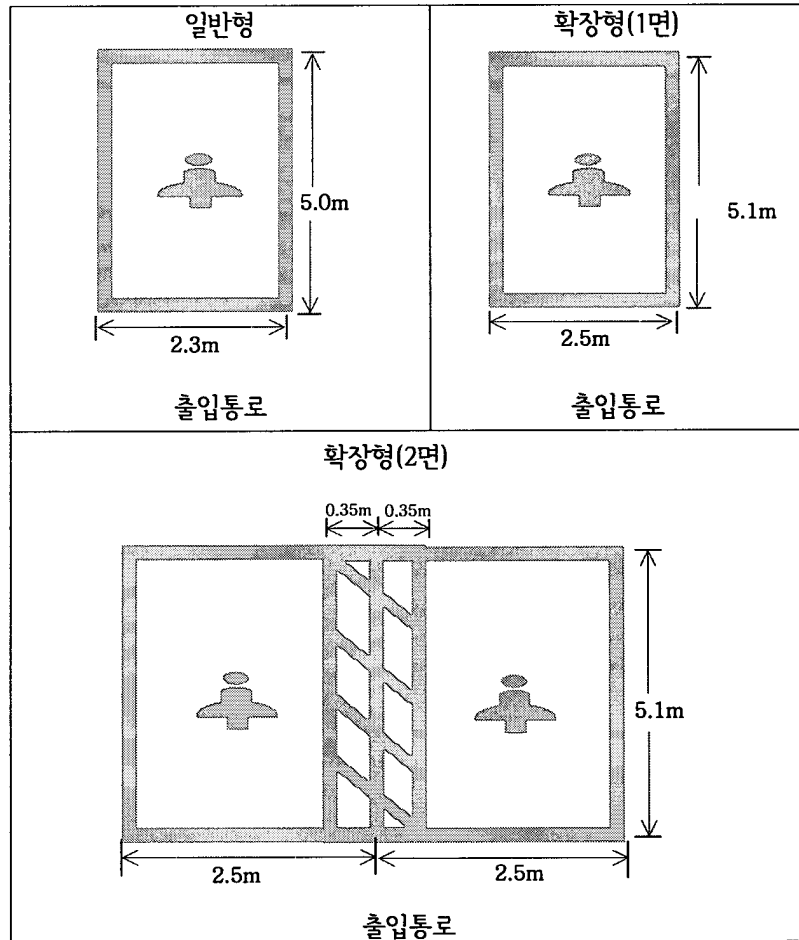
가.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 수강 시마다 90분 면제

나.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 정기권 50% 할인(단, 중복할인 불가)

21. 공무수행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2.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3]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1조의4제4항 관련)



- 비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 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시 :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신 설></p>	<p>제21조의4(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p> <p>③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p>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p>

현 행

개정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 차시 10분당	1일주 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주 차시 10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150,000	60,000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100,000	40,000	4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20,000	3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200	30,000	20,000

- 비고 -

1. ~ 2.(생략)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
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경의선철도와 대
흥로를 잇는 도로·대흥로·용산선철도·양
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

나. ~ 바. (생략)

표 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 차시 5분당	1일주 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주 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150,000	6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00,000	40,000	20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20,000	15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비고 -

1. ~ 2.(현행과 같음)

3. -----.

가. 1급지 : -----

1)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이화여대길
·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연
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
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대
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
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
하고 있는 대지

나. ~ 바.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p>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u>30% 범위 안에서</u> 조정할 수 있다.</p>	<p>4. ----- ----- ----- ----- <u>50퍼센트 범위에서</u> ----- -----.</p>
<p>5. ~ 6. (생략)</p>	<p>5. ~ 6. (현행과 같음)</p>
<p>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 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p>	<p>7. ----- ----- ----- ----- -----.</p>
<p>가. (생략)</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p>	<p>나. ----- ----- <u>제12호·제13호·제15호</u> ----- ----- -----</p>
<p>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써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p>	<p>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써 국가보훈처장이 ----- -----</p>
<p>8. ~ 21. (생략) <u>< 신 설 ></u></p>	<p>8. ~ 21. (현행과 같음) 22. <u>서울특별시장</u>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04 824 357 864">< 신설 ></p>	<p data-bbox="842 315 1401 790">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말한다.)</p> <p data-bbox="831 842 948 882">[별표 3]</p> <p data-bbox="847 904 1374 976">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1조의4제4항 관련)</p> <div data-bbox="831 983 1398 1906"> </div> <p data-bbox="831 1973 1401 2045">- 비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p>

현 행	개정안
	<p>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p> <p>-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cm × 세로 155cm</p> <p>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p> <p>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p>